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90

발의연월일: 2024. 8. 6.

발 의 자: 강선영·배현진·허성무

김대식 · 김용태 · 한기호

주호영 · 정동만 · 강대식

박수영 · 서지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경찰공무원법」, 「소방공무원법」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·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,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,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일반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경찰관, 소방관이 전사·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 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희 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30조 제1항 단서).

법률 제 호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공무원이 사망한 후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0조의4제1항제5호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9조의3제1항제5호, 「경찰공무원법」 제19조제 1항제2호, 「소방공무원법」 제17조(순직한 사람이 특별승진된 경우에 한정한다)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기준소득월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) 제3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급여액 산정의 기초) ①	제30조(급여액 산정의 기초) ①
이 법에 따른 급여(제43조제1	
항·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·	
조기퇴직연금 및 제54조제1항	
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은 제외	
한다)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	
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	
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. <u><단</u>	
<u>서 신설></u>	무원이 사망한 후 「국가공무
	원법」 제40조의4제1항제5호,
	「지방공무원법」 제39조의3제
	1항제5호, 「경찰공무원법」 제
	19조제1항제2호, 「소방공무원
	법」 제17조(순직한 사람이 특
	별승진된 경우에 한정한다)에
	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기준소
	득월액은 특별승진된 계급을
	기준으로 산정한다.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